



제319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
2026. 4. 20(월)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2026. 4. 20.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조공선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편성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2026년 4월 7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예산안 총괄

상정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분 및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등을 통하여 편성된 추경(안)임.

먼저 **예산안의 총 규모**를 보고 드리면 기정예산 2조 3,457억 8,700만 6천 원에 비하여 2,398억 8,053만 3천 원이 증가된 2조 5,856억 6,753만 9천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33억 9,856만 3천 원이 증가된 2조 2,631억 9,603만 2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864억 8,197만 원이 증가된 3,224억 7,150만 7천원입니다.

회계별예산규모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구성비 (%)	기정액	구성비 (%)	비교증감	
					비교증감	증감률 (%)
총 계	2,585,667,539	100.00%	2,345,787,006	100.00%	239,880,533	10.23%
일반회계	2,263,196,032	87.53%	2,109,797,469	89.94%	153,398,563	7.27%
특별회계	322,471,507	12.47%	235,989,537	10.06%	86,481,970	36.65%
공기업특별회계	206,852,247	8.00%	159,311,380	6.79%	47,540,867	29.84%
기타특별회계	115,619,260	4.47%	76,678,157	3.27%	38,941,103	50.79%

□ 세입재원

○ 세입총괄 : 총 1,533억 9,856만 3천 원이 증가되었음

재원별 세부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440억 9,635만 2천 원, 특별조정교부금 87억 6,000만 원, 국도비보조금 362억 1,565만 1천 원, 순세계잉여금 639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 복지환경위원회 부서별 예산 편성내역

○ 복지환경위원회 국소별 총괄 세출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
총 계	1,415,569,883	1,321,570,555	93,999,328	
복 지 국	1,099,689,885	1,043,041,753	56,648,132	5.43 %
환 경 국	223,423,984	194,054,894	29,369,090	15.13 %
남양주보건소	28,208,358	27,673,909	534,449	1.93 %
남양주풍양보건소	14,520,520	14,240,260	280,260	1.97 %
동부보건소	10,485,451	10,162,107	323,344	3.18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39,241,685	32,397,632	6,844,053	21.13 %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711억 9,194만 4천 원에서 5.45% 증가한 1조 3,405억 1,515만 6천 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59.23%에 해당합니다.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
총 계	1,340,515,156	1,271,191,944	69,323,212	5.45%
복 지 국	1,089,848,527	1,033,510,219	56,338,308	5.45 %
환 경 국	158,210,615	153,207,817	5,002,798	3.27 %
남양주보건소	28,208,358	27,673,909	534,449	1.93 %
남양주풍양보건소	14,520,520	14,240,260	280,260	1.97 %
동부보건소	10,485,451	10,162,107	323,344	3.18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39,241,685	32,397,632	6,844,053	21.13 %

복지환경위원회 일반회계 주요편성 내용

- 복지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조 335억 1,021만 9천 원 보다 5.45% 증가한 1조 898억 4,852만 7천 원이며,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207억 9,926만 2천원, 기초연금 지급 135억 8,586만 6천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99억 5,77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국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532억 781만 7천 원 보다 3.27% 증가한 1,582억 1,061만 5천 원이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5억 9,898만 원, 사능천(약대울교~장내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남양주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276억 7,390만 9천 원 보다 1.93% 증가한 282억 835만 8천 원이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42억 4,026만 원 보다 1.97% 증가한 145억 2,052만 원이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4,763만 2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동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101억 6,210만 7천 원 보다 3.18% 증가한 104억 8,545만 1천 원이며, 국가예방접종 실시 4,494만 1천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으로 기정예산액 323억 9,763만 2천 원 보다 21.13% 증가한 392억 4,168만 5천 원이며, 국가하천 유지보수(한강) 13억 8,809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9억 7,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기타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503억 7,861만 1천 원에서 48.98% 증가한 750억 5,472만 7천 원으로 시 전체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64.92%에 해당합니다.

○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 감	증감률 (%)
복 지 국	9,841,358	9,531,534	309,824	3.25 %
의료급여사업	9,841,358	9,531,534	309,824	3.25%
환 경 국	65,213,369	40,847,077	24,366,292	59.65 %
발전소주변지원사업	191,185	191,185	0	0.00%
수질개선	29,058,355	28,343,005	715,350	2.52%
폐기물처리시설	35,963,829	12,312,887	23,650,942	192.08%
남양주보건소	-	-	-	-
남양주풍양보건소	-	-	-	-
동부보건소	-	-	-	-
공원녹지관리사업소	-	-	-	-

-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5억 3,153만 4천 원보다 3.25% 증가한 98억 4,13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83억 4,300만 5천 원보다 2.52% 증가한 290억 5,83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23억 1,288만 7천 원보다 192.08% 증가한 359억 6,38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복지환경위원회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 장애인복지관건립기금

사업 추진계획 변경으로 인한 공기관 위탁사업비(20,722백만원) 감액 및 각종 인증용역 등을 위한 시설비(433백만원) 증액 반영

○ 2026년 기금 조성규모

(단위: 천원)

구분	2025년도 말 조성액(A)	2026년도 조성계획			2026년도 말 조성액 (E=D+A)
		수입(B)	지출(C)	증감 (D=B-C)	
장애인복지관 건립기금	22,147,040	511,436	1,620,000	△1,108,564	21,038,476

□ 검토 의견

예산 확정 후 예측하지 못한 사유의 발생과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 기타 여건의 변화 등으로 세입세출에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되는 예산안으로,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라고 규정한 법적 요건과 ‘예산 성립 이후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라는 사실적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의 충족여부와 함께 기정예산에서 충당할 수 있는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예산의 경우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및 예산 산출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